

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

의안번호	제2026-19호	심의 · 의결 사항
심의·의결일자	2026. 7. 16.	
공개여부	공개	

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(안)

제 출 자	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6. 7. 16.

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(안)

□ 추진 개요

- (추진 근거)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특별위원회)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(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등
- ※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,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

□ 특별위원회 개요

- (기능·역할)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사전 검토 또는 자문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구성·운영
- (위원 구성) 위원장 1명 포함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(위원장) 특별위원회 위원 중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
 - (위원)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
 - (임기) 위촉일로부터 6개월(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
□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

- (분야)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
- (필요성) ①국민의 학습기본권에 대한 재해석, ②정규 학교교육 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학습기본권 실현 방안 설계
- (운영방향) ①학습기본권에 대한 철학적·교육학적 담론 수준의 개념 연구, ②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
- (위원구성) 교육(철학·평생교육·행정), 법학(헌법·민법), 정치·사회 철학, 노동경제, 경영 등 전문 연구자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
- (자문위원) 해당 정책 관련 국책연구원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
- (임기) 위촉일로부터 6개월(필요시 단축 혹은 연장 가능)

□ 향후 계획(안)

-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'26.7월~